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28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확대 시행합니다.
3. 개정안에 따른 확대 대상 장애유형은 지체·뇌병변·언어·지적장애(4개 유형)이며, 해당 장애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별도 전문과정을 수련한 ‘신경분과’에 한정하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 - 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 작성 시에 ①전문의 과목(소아청소년과) 및 ②전문의 자격번호와 함께 ‘③신경 분과’와 ‘④신경 분과 전문 자격번호’에 대한 추가 기재를 요청드리니 장애등록심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, 대한소아신경 학회

민간전문가 정미숙 행정사무관 두유림 장애인정책과장 최봉근 전결 2022. 1. 19.

협조자

시행 장애인정책과-339

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보건복지부

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290 팩스번호 044-202-3960 / ms103@korea.kr

/ 대국민 공개